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5-751호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관련 징구자 모집공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우리 구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의 동의서 제출 편의성 개선 및 정비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정비계획 동의서 징구자를 모집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4월 10일
구로구청장

1. 모집기간: 2025.04.10.(목) 10:00 ~ 2025.04.30.(수) 17:00
2. 모집대상: 오류동 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또는 토지등소유자 가족
3. 모집인원: 15명
4. 선정방식: 선착순 모집
5. 신청방법: 구로구청 4층 도시개발과에 본인 직접 방문 제출
6. 제출서류
 -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증(사본) 각 1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부
6. 활동기간: 동의서 징구자 지정 공고일 ~ 정비계획(안) 입안 시까지

7. 활동내용: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 및 정비계획(안) 주민안내 등 지원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동의서 징구자는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나. 징구된 동의서 및 첨부자료 일체 외부 반출은 금합니다.

다. 지정된 징구자 외 대리인 징구 및 구청에 제출 불가합니다.

라. 동의서 징구 시 및 징구서류 제출 시 지정 증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 등을 위반할 경우, 징구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9.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로구 도시개발과(담당자: 황윤성, ☎02-860-25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2025-29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29호

제22기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당기(제22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제2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과 목	제22(당) 기		제21(전) 기	
	금액		금액	
자 산				
I.유 동 자 산		1,126,597,232		2,574,991,293
(1) 당좌자산		1,126,597,232		2,574,991,293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541,524,031		2,025,988,998	
(당기말세입세출외현금:200,030,213)				
2. 단기금융상품(주석3)	-		-	
3. 미수금(주석4)	585,073,201		549,002,295	
4. 선금금(주석5)	-		-	
II.비 유 동 자 산		256,456,542		278,701,438
(1) 투자자산		97,950,360		101,404,563
1. 퇴직연금운용자산)	97,950,360		101,404,563	
(2) 유형자산(주석6)		18,106,182		36,599,875
1. 차량운반구	178,853,531		195,303,731	
감가상각누계액	(166,566,619)		(172,017,976)	
2. 공기구비품	293,298,410		293,298,410	
감가상각누계액	(287,479,140)		(279,984,290)	
(3) 무형자산(주석6)		-		297,000
1. 개발비	-		-	
2. 기타의무형자산	-		297,000	
(4) 수탁자산(주석,6)		-		-
1. 건 물	90,428,235,758		64,902,987,448	
감가상각누계액	(20,210,664,394)		(18,305,686,728)	
수탁자산취득보조금	(70,217,571,364)		(46,597,300,720)	

2. 건설중인자산	-		160,080,0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		(160,080,000)	
2. 차량운반구	162,858,040		117,768,790	
감가상각누계액	(110,247,713)		(79,375,508)	
수탁자산취득보조금	(52,610,327)		(38,393,282)	
3. 공기구비품	1,840,701,930		1,583,731,600	
감가상각누계액	(1,509,157,893)		(1,332,836,984)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31,544,037)		(250,894,616)	
4. 시설장치	945,394,812		919,092,612	
감가상각누계액	(865,089,444)		(802,579,491)	
수탁자산취득보조금	(80,305,368)		(116,513,121)	
5. 기타의무형자산	193,796,515		78,949,506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93,796,515)		(78,949,506)	
(5) 기타비유동자산		140,400,000		140,400,000
1. 회원권	139,600,000		139,600,000	
2. 전신전화가입권	800,000		800,000	
자 산 총 계		1,383,053,774		2,853,692,731
부 채				
I.유 동 부 채		883,053,774		2,353,692,731
1. 미지급금(주석7)	97,950,360		101,404,563	
2. 예수금(주석9)	200,030,213		201,352,653	
3. 선수금(주석10)	-		1,501,933,220	
4. 미지급비용	585,073,201		549,002,295	
II.비 유 동 부 채		-		-
1. 퇴직급여충당금(주석11)	3,424,843,500		3,204,793,900	
2. 퇴직연금 운용자산	(3,424,843,500)		(3,204,793,900)	
부 채 총 계		883,053,774		2,353,692,731
자 본				
I. 자 본 금		500,000,000		500,000,000
1. 자본금(주석12)	500,000,000		500,000,000	
II. 이 익 잉 여 금		-		-
1. 미처분이익잉여금	-		-	
자 본 총 계		500,000,000		500,000,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83,053,774		2,853,692,731

손익계산서

당기(제22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제21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단위: 원)

과 목	제22(당) 기		제21(전) 기	
	금액		금액	
I. 매출액		14,643,235,073		13,675,284,658
1. 대행사업수익	16,249,912,316		15,546,164,756	
2. 정산반환금(주석8)	(1,606,677,243)		(1,870,880,098)	
II. 매출원가		12,454,364,251		11,497,590,339
1. 인건비	4,937,035,882		4,769,155,207	
2. 퇴직급여	423,280,493		319,627,374	
3. 연금부담금 등	500,753,550		468,336,030	
4. 여비	320,000		180,000	
5. 동력비	874,663,290		850,639,780	
6. 일반운영비	1,360,844,812		1,413,481,640	
7. 수선유지교체비	822,611,728		602,550,012	
8. 업무추진비	9,168,920		7,914,300	
9. 감가상각비(주석6)	7,791,850		14,272,145	
10. 일반보전금	2,687,312,879		2,278,896,181	
11. 평가급	496,101,057		488,000,870	
12. 관서업무비	18,315,240		19,138,790	
13. 재료비	316,164,550		265,398,010	
III. 매출총이익		2,188,870,822		2,177,694,319
IV. 판매비와관리비		2,188,870,822		2,177,694,319
1. 인건비	1,011,515,802		984,753,466	
2. 퇴직급여	230,089,400		219,395,993	
3. 연금부담금 등	128,205,870		122,986,860	
4. 여비	12,897,200		6,735,974	
5. 일반운영비	437,386,693		425,576,496	
6. 수선유지교체비	35,937,850		85,288,660	
7. 업무추진비	8,343,930		11,999,530	
8. 감가상각비(주석6)	10,701,843		18,406,000	
9. 무형자산상각비(주석6)	297,000		594,000	
10. 일반보전금	13,831,960		21,813,390	
11. 포상비	8,000,000		6,400,000	

12. 평가급	225,588,534		192,742,810	
13. 관서업무비	13,274,740		16,591,770	
14. 연구개발비	37,000,000		48,609,370	
15. 출연금	15,800,000		15,800,000	
V. 영업이익		-		-
VI. 영업외수익		24,661,100		9,916,120
1. 이자수익	152,998,514		135,241,628	
2. 유아스포츠단지원금	30,025,000		-	
3. 고용지원금수입	5,200,000		2,100,000	
4. 기타영업외수익	15,316,450		1,884,416	
5. 퇴직연금운용수익	113,709,207		143,347,351	
6.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0		-	
7. 기타보조금수입	10,000,000		10,000,000	
8. 경영자협의체부담금	1,200,000		600,000	
정산반환금	(304,588,071)		(283,257,275)	
VII. 영 업 외 비 용		24,661,100		9,916,120
1. 유아스포츠단지원금 지출	13,860,00		-	
2. 기타보조금 지출	9,601,100		9,316,120	
3. 경영자협의체부담금	1,200,000		600,000	
VIII. 당기순이익(또는순손실)		-		-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4월 10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 인 호

감사의견 : 위 제22기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윤희계법인 대표이사 이 상 수

부 의 안

2025년 제1회 이사회			
년 월 일	2025. 03. 31.	의안번호	제 5 호
의 제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경영지원팀장 최병민

2. 주 문 :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사유

- 가. 현행 직제내용에 맞는 규정 개정 및 조직·정원 관리의 효율성 강화
- 나. 구로G밸리체육관 신규 위수탁에 따른 정원 개정
- 다. 구로G밸리체육관 신규 위수탁에 따른 제13조(사무분장) 개정

4.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정원 관리 계획(안) 경영-1285(25.3.13.)
구로G밸리체육관 위·수탁 협약 체결 완료 보고 기획-454(25.2.4.)
- 나. 예산조치: 없음
- 다. 합 의: 없음
- 라. 절 차: 없음
- 마.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6. 첨부자료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 제41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로G밸리체육관 관리

[별표 2] 정원표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원

(단위 : 명)

합계	임 원		일반직		
	이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이하
85	1	1	3	8	72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무분장) (생략)	제13조(사무분장) (현행과 같음)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오류고가배드민턴장 관리</u>	<u><삭 제></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⑥ 신도림생활체육관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⑥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구로누리배드민턴장 관리</u>	<u><삭 제></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안양천파크골프장 관리</u>	<u><삭 제></u>																																		
<u><신 설></u>	<u>9. 구로G밸리체육관 관리</u>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가. 정원 (단위 : 명)	가. 정원 (단위 : 명)																																		
<table><tr><th rowspan="2">합계</th><th colspan="2">임원</th><th colspan="3">일반직</th></tr><tr><th>이사장</th><th>상임이사</th><th>3급</th><th>4급</th><th>5급이하</th></tr><tr><td>82</td><td>1</td><td>1</td><td>3</td><td>8</td><td>69</td></tr></table>	합계	임원		일반직			이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이하	82	1	1	3	8	69	<table><tr><th rowspan="2">합계</th><th colspan="2">임원</th><th colspan="3">일반직</th></tr><tr><th>이사장</th><th>상임이사</th><th>3급</th><th>4급</th><th>5급이하</th></tr><tr><td>85</td><td>1</td><td>1</td><td>3</td><td>8</td><td>72</td></tr></table>	합계	임원		일반직			이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이하	85	1	1	3	8	72
합계		임원		일반직																															
	이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이하																														
82	1	1	3	8	69																														
합계	임원		일반직																																
	이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이하																														
85	1	1	3	8	72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본다.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본다.																																		

부 의 안

2025년 제1회 이사회			
년 월 일	2025. 03. 31.	의안번호	제 6 호
의 제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경영지원팀장 최병민

2. 주 문 :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사유

가.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신규 임용 직원 적정한 수습기간 설정

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2항 개정사항 반영

4.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2항

신규 임용 직원관련 규정 개정 계획_경영-1238(25.3.11.)

나.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없음

라. 절 차: 없음

마.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6. 첨부자료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 제41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6개월로 하되, 인력 운영상 필요에 따라 3개월로 할 수 있다”를 “3개월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래서는”를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고 공단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6조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습임용)① 직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u>그 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인력 운영상 필요에 따라 3개월로 할 수 있다.</u> 다만, 공단 설립 후 최초로 임용된 직원에 <u>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습임용)① ----- ----- -----, <u>그 기간을 3개월로 한다.</u> ----- ----- ----- <u>대해서는</u> ----- -----.
②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1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 ----- ----- -----.
1. <u>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u>	1. <u>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고 공단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휴직기간) 1.~ 7. (생략)	제36조(휴직기간) 1.~7. (현행과 같음)
8. 제35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1년(여성 3년) 이내로 하되 산전산후 유급 휴가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8. ----- ----- ----- -----.
<u><단서 신설></u>	<u>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u>

9. (생략)	<u>를」 제19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 용할 수 있다.</u> 9. (현행과 같음)
---------	---

부 의 안

2025년 제1회 이사회			
년 월 일	2025. 03. 31.	의안번호	제 7 호
의 제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경영지원팀장 최병민

2. 주 문 :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사유

가. 공무직 가군 수습제도 신설

- 공무직 가군도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4.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신규 임용 직원관련 규정 개정 계획_경영-1238(25.3.11.)

나.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없음

라. 절 차: 없음

마.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6. 첨부자료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 제41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공무원 가군을 신규 임용할 경우,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3개월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당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고 공단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채용의 원칙)① ~ ⑥ (생략)	제7조(채용의 원칙)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u>공무직 가군을 신규 임용할 경우,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3개월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당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고 공단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u>

부 의 안

2025년 제1회 이사회			
년 월 일	2025. 03. 31.	의안번호	제 8 호
의 제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경영지원팀장 최병민

2. 주 문 :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사유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안 반영하여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을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7항 개정안 반영하여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규정 및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제35조의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임신부 정기건강진단 기준(「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시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마. [별지 제1호 서식]휴가신청원 개정을 통해 신청 방법을 명확히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바.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녀입영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가 포함된 특별휴가를 제도입하고자 함

4.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질 차 : 해당없음

마. 기 타 : 해당없음

6. 첨부자료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74조 발췌본 1부.

나.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다. [내부만족도향상]특별휴가 재도입계획. 끝.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 제41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33조제1항, 2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2. 취학 전 영유아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③ 공단은 일반직 및 공무원 가군 장기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한번”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되어야 한다”를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6주”를 “32주”로, “근로자”를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여직원은 임신한 경우”를 “임신한 여직원은 제35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를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로 한다.

제35조의5제4항과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휴가·휴직신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3조제1, 2, 3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첫 해(2025. 7. 1.~2025. 12. 31.)에 대해서는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일)의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휴 가 · 휴 직 신 청 원

담당			

소속		직 급		성 명		
휴가 구분	1. 연차휴가 2. 청원휴가 3. 휴직 4. 기타					
휴가 종류	1. 연차휴가	1. 연차				
	2. 청원휴가	2-1. 결혼, 2-2 출산(배우자) 2-3 입양휴가 2-4 사망				
	3. 기타휴가	3-1 공가 3-2 보상휴가(대체휴가) 3-3 병가 3-4 여성보건휴가(태아검진) 3-5 여성보건휴가(생리) 3-6 가족돌봄휴가 3-7 난임치료휴가 3-8 특별휴가				
	4. 휴직	4-1. 육아휴직 4-2. 가족돌봄휴직 4-3.기타 휴직				
휴가 기간	시작일	시작시간	종료일	종료시간	신청일수	연차차감
사용 현황						
휴가 사유	휴가 종류 2~4번은 사유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 * 해당자만 작성

대상 자녀	성명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신청 내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육아휴직 기간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상기와 같이 휴가(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연차휴가) ① ~ ④ (생 략)	제28조(연차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신 설>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특별휴가)	제33조(특별휴가)
<신 설>	①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②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

<신 설>

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2. 취학 전 영유아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③ 공단은 일반직 및 공무원 가군 장기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기간 이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3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

제35조(임산부의 보호) ①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여직원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 ⑪ (생략)

제35조의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공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

에는 100일, 한번-----
-----.

-----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32주 -----
-----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

⑦ (현행과 같음)

⑧ 임신한 여직원은 제35조의3에 따라 -----
-----.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제35조의5(난임치료휴가) ① ~ ③ (생 략)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난임치료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휴가·휴직신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휴가신청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2019.07.11>

휴 가 신 청 원

담당	팀장	본부장	이사장

소속	직급	성명
휴가 구분	휴가 종류	기간
※ 휴가 구분 1. 연차 2. 청원휴가 3. 휴직 4. 기타		
※ 휴가 종류 1. 연차 2. 결혼 3. 육아휴직 4. 사망 5. 출산휴가 6. 여성보건휴가 7. 난임휴가		
장기와 같이 휴가를 신청합니다.		
20.년월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소속부서장 확인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휴가·휴직신청원

[별지 제1호 서식]

휴 가 · 휴 직 신 청 원

담당	팀장	본부장	이사장

소속	직급	성명				
휴가 구분	1. 연차휴가 2. 합동휴가 3. 휴직 4. 기타					
휴가 종류	1. 연차휴가 1. 연차					
	2. 합동휴가 2-1. 결혼 2-2. 출산(배우자) 2-3. 입양휴가 2-4. 사망					
	3. 기타휴가 3-1. 출가 3-2. 퇴직휴가(대체휴가) 3-3. 일가					
	3-4. 여성보건휴가(태아검진) 3-5. 여성보건휴가(산전) 3-6. 기동출발휴가 3-7. 난임치료휴가 3-8. 특별휴가					
휴가 기간	4. 휴직 4-1. 육아휴직 4-2. 기동출발휴직 4-3. 기타 휴직					
휴가 사유	사실일	사실시간	휴직일	휴직시간	신청일수	연차차감
사유	휴가 종류 2-4번은 사유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성명	출생일	출생지	출생일	출생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육아휴직 기간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장기와 같이 휴가(휴직)를 신청합니다.

20.년월일

신청자 (인)

부 의 안

2025년 제1회 이사회			
년 월 일	2025. 03. 31.	의안번호	제 9 호
의 제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도영

2. 주 문 :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사유

가. 기존회원 반 변경 특혜에 대한 민원 발생(주요 인기 강좌 선점)

- 대상인원 : 이용 회원(기존 회원)

- 관련근거 : 공단 체육시설 운영규정 제13조(프로그램 변경)

- 기존회원의 반 변경 특혜로 신규 회원 이용 및 유입 불가

나. 체육3팀 반 변경(24일) 2024년도 기존회원 약 5,000여건 혜택

다. 개강 이후 4일까지 수강 후 100% 환불 처리됨: 배분제 외부강사 민원

라. 24개 자치구 중 19개 공단의 경우 신규 등록으로 공정한 기회 제공

4. 주요골자

가. 제3장 환불 및 변경을 제3장 환불 계정

나. 제13조(프로그램 반 변경) 삭제

다. 별지3호 서식 삭제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6. 첨부자료 :

가. 타 공단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 제41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환불 및 변경”을 “환불”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5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 3장 환불 및 변경</u> <u>제13조(프로그램 변경) ① 회원은 공단</u> <u>이 정한 절차를 통해 체육시설에 변</u> <u>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되지 않은</u> <u>프로그램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u> <u>② 프로그램 변경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u> <u>접 별지 제 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u> <u>여 회원 카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u> <u>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확인할</u> <u>수 있도록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u> <u>③ 프로그램 변경 신청은 등록 후부터</u> <u>개강 후 4일까지 할 수 있다.</u> <u>[별지 제3호 서식]</u>	<u>제 3장 환불</u> <u>제13조(프로그램 변경) <삭 제></u> <u>[별지 제3호 서식] <삭제></u>

프로그램 변경 신청서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여부나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프로그램명 *
회원번호	연락처 *
변경프로그램	
처리 후 지역	

지역 발생 시 산출내역 :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프로그램 변경

- 변경은 개강 24일이며 개강 후 4일까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해 가능합니다.
* 100%카드 취소처리 후 변경 등록/ 현금 100%입금 처리 후 변경 등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의거 신도원생활체육관 관련 업무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 입금계좌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신도원생활체육관

인사발령

○ 인사발령(전출) 내역

2025. 4. 7. 字.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소 속	직 급
1	엄의식	서울특별시 전출을 명함	구로구	지방부이사관

○ 인사발령(전입) 내역

2025. 4. 9. 字.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소 속	직 급
1	최원석	구로구청 전입을 명함 부구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지방부이사관

○ 인사발령(전보) 내역

2025. 4. 7. 字.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소 속	직 급
1	강월명	행정관리국장에 보함	기획경제국	지방서기관
2	이동섭	기획경제국장에 보함	안전교통국	지방서기관
3	박영주	복지지원국장에 보함	스마트환경국	지방서기관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소 속	직 급
4	신수정	안전교통국장에 보 함	행정관리국	지방서기관
5	최영미	스마트환경국장에 보 함	복지지원국	지방서기관
6	이진경	총무과장에 보 함	신도림동	지방행정사무관
7	최현숙	신도림동장에 보 함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 인사발령(임기제공무원 임기만료) 내역

2025.04.20.字.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소 속	직 급
1	정영숙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직을 면 함 (계약기간 : 2022.04.20.~2025.04.19.)	보건소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